

의안번호	제3094호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고성군수
제출연월일	2026. 4. 24.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094호
----------	--------

제출연월일: 2026. 4. 24.

제출자: 고성군수

1. 개정이유

법제처 권고에 따라, 수탁자에 대한 일방적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개선하고, 위탁운영 관련 적용 조례를 명확히 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운영에 관한 적용 조례를 명확히 규정(안 제7조)

나. 수탁자에 대한 일방적 책임보험 가입 의무 삭제 및 지자체장이 관리하는 시설에 손해보험이나 공제 가입 의무 규정(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117조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복지지원과-7961(2026. 2. 19.)호]

라. 기 타

-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6-466호
 - 가) 예고기간: 2026. 3. 3.~2026. 3. 23.(20일간)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5)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의 제목 “(원상복구 등)”을 “(원상복구 및 보험가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원상복구 및 보험가입) ②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설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위탁운영) ① ~ ③ (생략)</p> <p><u><신 설></u></p>	<p>제7조(위탁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p> <p><u>④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u></p>
<p>제10조(<u>원상복구 등</u>) ① (생략)</p> <p><u>② 군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수탁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u></p>	<p>제10조(<u>원상복구 및 보험가입</u>) ① (현행과 같음)</p> <p><u>②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설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u></p>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기존 시행 중인 조례를 현 상황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추가 재정 수반 요인이 없으므로
비용추계를 미첨부함.

작성자: 문화예술과장 최 다 원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건물, 선박
2.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및 기구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